자동차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김 희 중
〈한국자동차보험(주)지점장〉

출퇴근이나 휴일 레저의 확산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자가용 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절대사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황색 신호에서 미리 출발한다든지 틈만 있으면 끼어든다든지 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여전하다.

가족 단위 나들이 여행중 일가족이 교통사고의 불행을 당했다든가 친구들끼리 휴가를 즐기고 오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 휴일 다음날 매스컴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된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그에 따라 늘어나는 자가용 차량의 교통사고에서는 자가용에 탑승하였던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이 문제된다.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자가용 운전자의 잘못으로 차내 탑승자가 다쳤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가 배상을 하든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종합보험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선,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는 차내 탑승자에게 어떠한 경우 어느 정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종합보험에서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에 관한 제도상으로는 차내 탑승자의 경우가, 보행인 등 차외의 피해자보다 손해 배상을 받는데 유리하다. 보행인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이 보행인의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손해 배상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내 탑승자의 경우는 오히려 꺼꾸로 거의 대부분이 탑승자인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즉, 차내 탑승자의 경우는 고의로 차에서 뛰어 내리든지, 본인 스스로 자살한 경우가 아니면 자가용 소유자는 차내 탑승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인 사업을 하며 사업상의 필요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차량등록 즉, 소유자 명의를 기업체로 한 경우, 거래처 방문을 위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탑승하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탑승자가 부상하였다면, 차량소유자(기업체)는 그 탑승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차내 탑승자가 소유자의 처, 자녀인 경우에도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차량 소유자의 손해 배상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의 예로는, 친목 모임에서 회원들끼리 차량 유류대 등 경비를 갹출하여 낚시를 가면서 회원중 한 사람이 자기의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회원들이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용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일정 비율 만큼 감액된다.

이와 같이,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는 차내 탑승자에 대하여 몇가지 유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차내 탑승자에 대한 종

합보험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내 탑승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 그러나 차내 탑승한 피해자와 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 사이에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으면, 차량 소유자가 비록 손해 배상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탑승 유형에 따라 감액의 방식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본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차내 탑승자가 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업무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은 소위 업무상의 재해이므로 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셋째, 직장 동료의 자가용 차량을 출퇴근시에 호의로 편승한 경우라든지, 같은 동네 사람이나 친구의 자가용 차량에 낚시, 등산, 성묘 등을 위하여 편승한 경우 등에는 일정 비율 만큼 보상금액을 감액하여 보상한다.

〈사례 1〉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편이 구입한 자가용 승용차이며, 그 처는 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류대 등 차량 유지비도 자기의 잡비에서 충당하는 경우, 휴일날 그 차량에 자기의 처를 탑승시키고 부부동반 고향친구들의 모임에 가다가 빗길에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탑승한 처가 부상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하여, 사고가 난 자가용 승용차는 가족들이 평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며, 전적으로 남편의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그 처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인 남편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기는 하나, 종합보험에서는 차량소유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가 있는 피해자 즉, 직계 존비속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신체 상해라는 상해 보험 성격의 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 2〉

영업 사원이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하여, 회사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다가,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선행하던 화물트럭의 뒷범바를 충격하여 탑승한 영업사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피용자인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소위 사용자 책임), 회사와 탑승한 피해자의 관계는 고용 관계로서 기업내부의 관계이며, 기업 내부에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부상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례 3〉

근처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시 그 승용차에 편승하고 다니면서 가끔 기름값을 부담하는데, 어느날 퇴근길에 과속 운전하다가 가드 레일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에 가끔 기름값을 부담하면서 편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탑승자는 무상으로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소적 이동이라는 "운행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탑승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을 감액하게 된다(소위 호의동승 감액), 종합 보험에서는 감액 비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로서는 자기가 출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틀별히 진로를 바꾸지 않고 직장동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5%~10% 정도 감액하게 된다.

〈사례 4〉

회사의 부서내에 회식이 있어 술을 먹게 되었는데, 본인은 집이 같은 방향인 상사를 집까지 바래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하여 술을 자제하고 있는데, 상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권하여 마지못해 음주를 하고, 승용차에 상사를 탑승시키고 귀가하던중, 상사가 귀가도중 계속해서 잡담을 걸고 본인도 주기가 있어, 핸들 조작 잘못으로 옆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탑승한 상사가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의 피해자인 상사는 소위 호의동승이라는 점에서는 위 〈사례 3〉과 거의 유사하나, 차이점은 탑승자인 상사가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되는 술을 권하고, 운전도중에도 잡담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상사는 〈사례 3〉의 감액 비율(5%~10%)에 10%를 가산하여 15%~20%를 감액하게 된다.